

2018년도 3/4분기

#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보고

2018. 11.

감사위원회

# 1. 개요

---

## 관련근거

-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7항  
“신고 접수현황에 대해 시의회는 분기별로 보고받아야 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.”

## 보고대상

- 기 간 : 2018. 7. 1. ~ 9. 30.(2018년 3분기)
- 대 상 :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에 온라인(원순씨 핫라인) 및 오프라인(우편, 방문 등)으로 공식 접수된 공익제보

## 접수결과

- 2018년 3분기 총 154건 접수

[표 1] 2018년 3분기 청구별 월별 접수현황 (단위: 건)

접 수 창 구	누 계	소 계	7월	8월	9월
공 익 신 고	116	25	10	7	8
공직자비리신고	405	128	38	43	47
부 정 청 탁	1	1	-	-	1
퇴직공무원특혜	-	-	-	-	-
합 계	522	154	48	50	56

※ 지난 분기(2018년 2분기) 접수 건수 192건에 비해 감소

## 2. 제보경로 및 발생기관 분석

### □ 제보 경로 분석

[표 2] 제보 경로별 접수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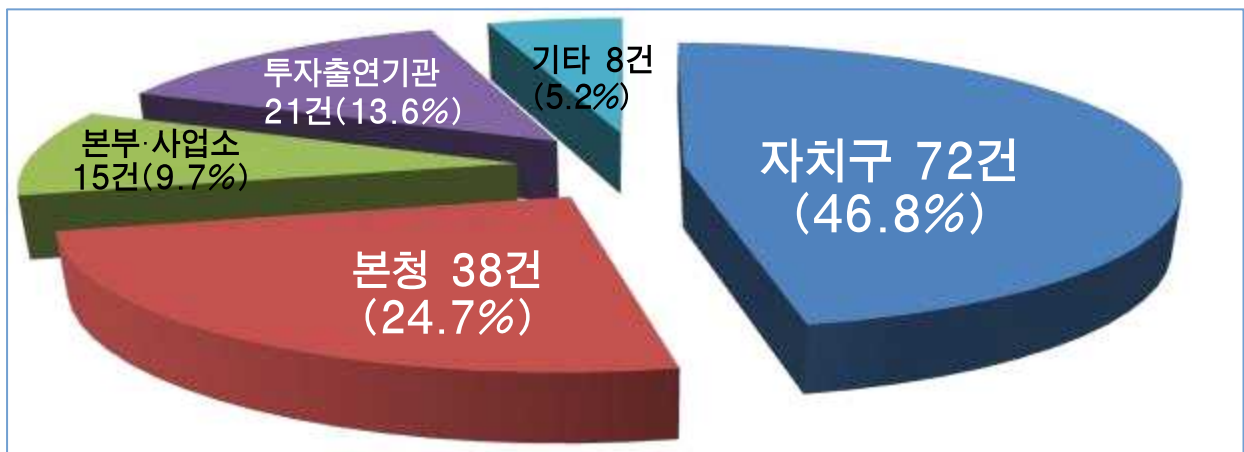
(단위: 건)

경로	합 계	온 라 인 홈페이지/모바일	국민신문고 시스템 연계	기 타 우편/방문/팩스
접수건수	154 (100%)	137 (89.0%)	7 (4.5%)	10 (6.5%)

\*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부 통합 민원 창구임

### □ 제보별 소관사무 분석

- 자치구 소관 사무 관련 제보가 72건(46.8%)으로 가장 많았음
  - 업무부적정 사항이나 품위위반 등 공직자비리신고 창구로 58건 접수
  - 공익신고 창구 13건 및 부정청탁 창구로 1건 접수
- 본청 소관 38건(24.7%), 본부·사업소 소관 15건(9.7%)
  - 본청은 공익신고 6건, 공직자비리신고 창구로 32건 접수
  - 본부·사업소의 경우 공익신고 2건, 공직자비리신고로 13건 접수
- 시 투자출연기관 소관 제보 21건(13.6%), 기타 8건(5.2%)
  - 투자출연기관 관련은 공익신고 3건, 공직자등 비리신고 18건
  - 기타 8건은 법원, 경찰, 사기업 등 타 기관 사무의 제보



### 3. 공익제보 분류

#### □ 제보내용의 분류

○ 접수된 154건 재분류 결과, 공익제보 요건에 부합하는 제보는 116건

[표 3] 접수 공익제보 재분류 결과 (단위 건)

총계	공익제보 해당 116건		일반민원/기타
	부패신고	공익신고	
154 (100%)	88 (57.1%)	28 (18.2%)	38 (24.7%)

\* 청원/제안/건의 등 일반민원 성격 제보는, 공익제보로 보기는 어려우나, 공익제보 처리에 준해 접수 답변하고 있음

※ 조례상 ‘공익제보’ 해당 신고 범위

구분	개요	신고 대상 행위
부패 신고	부패방지법 제2조(정의) “부패행위”신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</li> <li>2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</li> <li>3.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</li> </ol>
공익 신고	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(정의) “공익침해행위”신고	식품위생법, 의료법, 공정거래법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한 284개 법률 위반행위 신고
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	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	공정한 업무수행, 부당이익의 수수금지, 업무숙지의 의무,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 유지, 인지된 부정행위신고 및 보고의무 등에 대한 행동기준 위반 등

## 4. 제보내용 유형 분석

### □ 제보 세부내역

#### ○ 부패신고 해당 88건 세부 내용

[표 4] 재분류 결과 부패신고 해당 내용

(단위 건)

구분	소관기관	건수	내 용
복 무	자 치 구	1	허위출장/근태/성희롱 등 공무원 복무관련
	투자출연기관	1	
	소 계	2	
불 공 정 계 약	본 청	3	입찰 계약과정의 불공정행위나 정책 추진상의 특혜제공 등
	본 부 · 사 업 소	3	
	투자출연기관	5	
	소 계	11	
업 무 부 적 정	본 청	17	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미숙/부주의 또는 고의로 발생한 사건(업무소홀 혹은 업무 부당행위)
	본 부 · 사 업 소	3	
	자 치 구	28	
	투자출연기관	5	
	소 계	53	
인 사	본 부 · 사 업 소	1	기관의 부당 전보·인사 등
	투자출연기관	5	
	소 계	6	
품 위 손 상	본 청	3	영리행위 등 공무원이 지켜야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
	본 부 · 사 업 소	4	
	자 치 구	6	
	투자출연기관	2	
	기 타	1	
	소 계	16	
총 계		88	

\*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

## ○ 공익신고 해당 28건 세부 내용

[표 5] 재분류 결과 공익신고 해당 내용

(단위 건)

구 분	건수	내 용
개 인 정 보 보 호 법	1	민원인 동의 없는 인적사항 외부업체 제공
건 축 법	5	담당자의 부당한 건축허가 등
공 인 중 개 사 법	1	무자격자의 공인중개업 영업 행위 의심
국 민 건 강 증 진 법	1	경고 그림 등이 없는 담배 판매
노 인 복 지 법	1	노인복지시설의 어르신 방임 및 학대 의심
대 기 환 경 보 전 법	3	공사 현장에서 위반 물질 사용 의심
도 로 교 통 법	1	주차금지 지역의 불법주차행위
사 회 복 지 사 업 법	1	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학대 등
상 표 법	1	외국 명품을 모방한 이미테이션 제품 판매
영 유 아 보 육 법	5	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부당 급여 수령 등
옥 외 광 고 물 등 관 리 법	1	무정비 옥외광고물에 대한 부당 허가
장 애 인 복 지 법	4	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한 부정수급 및 장애인 억압
주 택 법	2	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규약 위반 등
하 수 도 법	1	공사로 인한 하수도관 파괴행위 등
총 계	28	

\*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

# 5. 처리 결과 및 조치 성과

## □ 공익제보 처리 내역(18년 3분기)

[표 6] '18년 3분기 공익제보 해당 사건 처리 현황 (단위 건)

구분	계	처분 및 개선		종결				조사중	취하
		처분(조치)	개선 등	해당 없음	증거 불충분	중복 종결	권한 없음		
부패신고	88	1	10	31	6	6	1	29	4
공익신고	28	2	2	6	1	4	-	8	5
<b>총계</b>	<b>116</b>	<b>3</b>	<b>12</b>	<b>37</b>	<b>7</b>	<b>10</b>	<b>1</b>	<b>37</b>	<b>9</b>

※ 개선 등 내역 : 구두경고, 주의촉구, 계도 및 그 외 행정지도 등 포함  
 ※ 공익제보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이며, 필요 시 연장 가능(조례 제13조 제5항)

## □ 처분(조치)사항

[표 7] 공익제보 조치(요구) 결과 (단위 건)

번호	신고구분	신고 내용	처분기 관	조치 내역
1	공익신고	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학대	자치구	개선명령1(해임)
2	부패신고	담당공무원의 안내 미숙 등	본청	부서경고2, 통보2
3	공익신고	어린이집 운영 부당급여 수령	자치구	시정지도1, 반환명령1(529,672원)